

[채점평]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2회 모의고사 출제 및 채점자입니다.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 간단히 채점평남겨드립니다.

[문제-1] 슈퍼 테라토이 문제

삼부자 판례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냈음에도, 판례를 빠짐없이 쓰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 자체의 전형적 답안이 복잡한 경우, 요건별로 어떤 판례를 써야 하는지 명확히 기억시켜야 합니다. (특히, A급 판례인 만큼, 어느 GS를 보셨어도 나왔을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2] 피배빨리 문제

표장 자체도 변형하고, 창작 사실관계를 섞어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기출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주의해주세요. 甲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대부분 맞으셨으나, 33조 1항 논점을 찾으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통신회선번호 문제는 33조 1항 7호 논점임을 밝히고, 논거도 판례대로 정확히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문제-3] X, Y 문제

'상표법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했는데 조문 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지나치게 1~2개 조문만을 깊게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채기표를 고려하여, 적당한 깊이로 다양하게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제-4] 숲의 공장 문제

문제 자체의 오류는 아니나, 첨부드린 해설파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혼선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기존에 배부드린 해설은 상표가 유사하다고 결론내시는 경우를 전제한 해설입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결론내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 다만, 상표가 유사하다고 결론 내고 그에따라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

하고 충분히 배점을 받을 수 있긴 하나, nature's friend를 타겟한 문제인 것이 분명한 만큼, 실제 대법원 판례대로 <비유사> 하다고 결론 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다만, 비유사하다고 결론내면 논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출제 포인트가 조금은 좋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너무 곱씹으시기보단, nature's friend 판례 법리와 포섭 자체를 중심으로만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답안 예시]

I. 문제의 소재 (1)

II. 甲 상표와 乙 상표의 유사 여부 - 소극

1. 판단법리 (6)

(1)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적 기준

(2) 외관, 호칭, 관념의 고려방법

2. 사안의 경우 (4)

* nature's friend 판례의 결론을 고려했을 때 비유사로 결론내리는게 바람직함

II. 설정등록 전 - 乙 출원에 대한 조치 (5)

1. §34①7 해당여부 - 상표가 비유사해서 적용될 수 없음

2. §34①9,12,13 해당여부 - 상표가 비유사해서 적용될 수 없음

3. §34①11 해당여부 - 결과OPEN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95후576)

cf) 참고: 95후576 사실관계 -> 출원상표 "Mickey & Minnie"에서 인용상표 "Mickey Mouse", "Minnie Mouse"가 용이하게 연상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 - (결과 OPEN)

*결과 OPEN - but,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 에는 해당할 지라도, 본 사안처럼 관념만이 유사하고 외관과 호칭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에 “용이하게 연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것인지 불분명함. 다만, 최대한 관련성 있는 판례를 ‘소개’ 정도로 해주는 게 바람직

III. 설정등록 후 - 乙 상표권에 대한 조치 (2)

§34①7,9,12,13 (소극), §34①11(적용‘여지’)

IV. 乙의 상표 사용에 대한 조치 (2) - 상표가 비유사 해서X

* 저촉관계가 아니므로 datafactory 판례 실익 ↓

* 상표 자체가 비유사하므로, 저명상표 상표권은 이종상품에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논점 기재 실익

↓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